

제421회 임시회
'24. 10. 11.(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안 제4조, 제5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및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초광역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99조1)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

1)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2)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
- 조례안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실체규정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	세입
	제5조	세출
	제6조	준용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분담금” 과 “사업비 분담금” 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한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바 타당함.

2) 「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및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조례안>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의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부담금
 2. 사업비 부담금
 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첨부된 비용추계를 보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5년('25~'29) 동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총 운영비의 25%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추계하였음.
 - **가칭**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3)에 따른 운영비 균등 부담 원칙에 따라 4개 시도가 각각 25%씩을 부담한 것으로 타당함.
 - 다만, 사업비의 경우에는 같은 규약 제17조제2항 후단에 '구성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사무의 이관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사업비 산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추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3)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경비부담)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부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안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바 타당함.